

톤백의 걸이용 로프를 지게차의 포크에 걸어주는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

재해일자

2016년 6월 8일

재해현황

사망 1명

작업명

로프 걸어주기 작업

재해장소

야적장

재해발생 개요



<기인물 톤백>

2016.06.08(금) 오전10:00경 경북 구미시 소재 사업장의 제품보관 야적장에서 톤백(500Kg~600Kg)을 출하하기 위해 톤백의 걸이용 로프를 지게차의 포크에 걸어주는 작업을 피재자와 지게차운전자가 2인 1조로 실시하였고, 지게차 운전자가 지게차로 사출성형 재료가 포장된 톤백을 트럭에 적재한 후 출하 장소에 돌아왔을 때, 피재자가 현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6월10일에 사망하였음

재해발생 원인



<야적장 전경>



<톤백 로프가 지게차의 포크에 걸려있는 사진>

- 지게차로 중량물 운반 작업 시 작업 지휘자 미배치
- 안전모, 안전대 미착용
- 고소 작업 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

재해예방 대책

- 지게차로 중량물 운반 작업 시 작업 지휘자 배치
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접촉하여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배치 또는 작업지휘자가(유도자)가 없을 경우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
- 안전모, 안전대 착용
추락, 넘어짐, 충돌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
- 고소 작업 시 추락방지조치 실시
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설치, 고소작업대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